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7,286천원
- 징수결정액 : 7,356천원
- 실제수납액 : 1,271천원
- 미수납액 : 6,085천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7.2%(전년도 57.1%)임.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처분액(D)		미수납액 (E)=(A)-(C-D)	예산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7,286	7,356	1,271	-	-	6,085	17.4	17.2%
세외수입	7,286	7,356	1,271	-	-	6,085	17.4	17.2
임시적 세외수입	7,286	7,356	1,271	-	-	-	17.4	17.2
기타수입	1,202	1,271	1,271	-	-	-	105.7	100
그외수입	1,202	1,271	1,271	-	-	-	105.7	100
임시적세외수입	6,084	6,085	-	-	-	6,085	0	0
지난년도수입	6,084	6,085	-	-	-	6,085	0	0
지난년도수입	6,084	6,085	-	-	-	6,085	0	0

※ 결손처분액 = 불납결손액 + 시효결손액,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당초예산 : 17억 2천 2백만원
- 예산현액 : 17억 2천 2백만원
- 지출액 : 13억 7천 1백만원
- 이월액 : 3천 2백만원
- 불용액 : 3억 1천 9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8.5%(전년도 23.1%)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천 4백만원, 지출잔액 2억 8천 5백만원임.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단위:천원)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1,721,980	1,370,818	32,253	318,910	18.5%
사업예산계	1,217,800	956,140	32,253	229,408	18.8%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458,198	326,429	32,253	99,517	21.7%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458,198	326,429	32,253	99,517	21.7%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19,000	12,240		6,760	35.6%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411,107	286,498	32,253	92,357	22.5%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28,091	27,691		400	1.4%
시정 청렴도 향상	148,800	130,819		17,981	12.1%
시정 청렴도 향상	148,800	130,819		17,981	12.1%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87,400	75,145		12,255	14.0%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61,400	55,674		5,726	9.3%
투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지원으로 신뢰성 확보	74,420	53,390		21,030	28.3%
투자출연기관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74,420	53,390		21,030	28.3%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74,420	53,390		21,030	28.3%
안전도시 서울 구현	131,150	106,222		24,928	19.0%
안전시스템의 정상동 및 안전해인사전 제거	131,150	106,222		24,928	19.0%
명예하도급호민관 운영	39,940	38,119		1,821	4.6%
안전감사 및 하도급 감사 활동 강화	91,210	68,103		23,107	25.3%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405,232	339,280		65,952	16.3%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추진 부조리신고 활성화	320,180	272,933		47,247	14.8%
부조리신고 보상	5,000	5,000		0	0.0%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5,240	60,965		4,275	6.6%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249,940	206,969		42,971	17.2%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47,400	31,363		16,037	33.8%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47,400	31,363		16,037	33.8%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 감찰 운영	37,652	34,984		2,668	7.1%
기강감찰 운영	37,652	34,984		2,668	7.1%
일 반 예 산 계	504,180	414,678		89,502	17.8%
기 본 경 비	504,180	414,678		89,502	17.8%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현원변동이 발생하여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예산확보를 위해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사무관리비 ⇒ 특정업무경비) 사업에서 총 1건, 1,585천원을 변경사용 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사항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1건, 3천2백만원

○ 사고이월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비 사고이월 총 1건, 3천 2백만원 이월하였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사항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21년도말 감사위원회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등 0원

○ 매각·폐기 등 0원

○ 당해연도말 총 수량 76개, 현재액은 7천 9백만원임.

Ⅱ. 검토 의견

1. 세입결산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2019회계연도, 941만원) 대비 22.6% 감소한 728만원이며, 세입은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3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27만원을 수납하여 17.4%를 징수(미수납액 608만원)했음.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처분액(D)		미수납액 (E)=(A)-(C-D)	예산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7,286	7,356	1,271	-	-	6,085	17.4	17.2%
세외수입	7,286	7,356	1,271	-	-	6,085	17.4	17.2
임시적 세외수입	7,286	7,356	1,271	-	-	-	17.4	17.2
기타수입	1,202	1,271	1,271	-	-	-	105.7	100
그외수입	1,202	1,271	1,271	-	-	-	105.7	100
지난년도수입	6,084	6,085	-	-	-	6,085	0	0
지난년도수입	6,084	6,085	-	-	-	6,085	0	0

※ 결손처분액 = 불납결손액 + 시효결손액,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의 127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하였으며, 당초예산(120만원) 보다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수당 반납 및 수수금지 금품 등의 세입조치 등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1회계년도 감사위원회 그외수입 세부내역 〉

(단위:천원)

징수결정일자	실제수납액	과세내역
2021-01-18	651,330	2020년 자치단체 상시모니터링(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반환
2021-01-15	463,700	수당 반납
2021-02-08	81,350	퇴직공무원 특수직무수당 반납
2021-06-09	60,000	수수금지 금품 등 세입조치 결정결의
2021-08-02	5,000	수수금지 금품 등 세입조치 결정결의
2021-09-02	10,000	수수금지 금품 등 세입조치 결정결의

- 감사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세입 중 징수결정 후 전액 미수납 처리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미수납된 세입(2건, 608만원)은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으로 감사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의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환수금임.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 중 미수납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수납률	징수율
임시적 세외수입	6,084	6,085	-	6,085	-	-
지난년도수입	6,084	6,085	-	6,085	-	-
지난년도수입	6,084	6,085	-	6,085	-	-

- 본 미수납 2건은 모두 2014년에 발생했으며, 미수납은 2017회계연도까지 재무국에서 관리하였으나, 결산기준 변경*에 따라 2018회계연도부터는 감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변경되었으며,
 - 본 미수납 건에 대해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미납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비징수관 지난연도수입 결산기준 변경 계획” (2016.8.) 재무국(세무과)
 - 2018회계연도부터 비징수관이 세외수입을 결산하도록 함.

- 미수납의 사유는 납부불능(안전감사담당관 소관 채납 건)과 납부거부(조사담당관 소관 미징수 건)로, 감사위원회는 고지서발부, 지난연도 수입 계상 등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결손 처분이 예상되는바, 채권소멸 또는 채권실현 등 장기 미수납 세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1회계연도 미수납된 그 외수입 현황 〉

(단위:원)

결산부서명	예산명	세목명	과세년월	주민/법인명	최종납기일자	다음연도이월액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그외수입	소송비용	2014-08	*****	2014-09-30	1,573,640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그외수입	소송비용	2014-02	***	2014-04-15	4,511,360

2. 세출결산

- 감사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7억 2천 2백만원으로, 이중 13억 7천 1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18.5%(3억 1천 9백만원) 수준임.
- 예산변경(158백만원)과, 이월처리(사고이월, 3천 2백만원)가 각각 1건씩 있었으며,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등의 사용은 없었으며, 국고보조금, 기금,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도 없음.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요약 〉

(단위:천원)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1,721,980	1,370,818	32,253	318,910	18.5%
사업예산 계	1,217,800	956,140	32,253	229,408	18.8%
일반예산 계	504,180	414,678		89,502	17.8%

가. 예산의 불용

- 감사위원회의 불용액은 총 3억 1천 9백만원 규모이며, 예산현액 17억 2천만원 대비 18.5% 수준으로, 전년(2020년, 23.1%) 대비 4.6% 감소한 수준이나, 서울시 일반예산 불용률이 2.5%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불용률 20%이상 사업은 5개 사업이며, 그 내역과 불용사유는 다음과 같음.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19,000	12,240	6,760	35.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반기 공직기강 계관(서울시-LH-SH) 공동 워크숍 미개최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411,107	286,498	92,469	30.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사위원 직무 워크숍, 시구감사협의회 직무 워크숍 등 미개최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74,420	53,390	21,353	28.3%	코로나19 장기화로 투자출연기관 윤리경영워크숍 등 오프라인 행사 미개최 및 온라인 대체
안전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91,210	68,103	62,320	25.3%	당초 계획과 달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문 실시 횟수 감소 및 업무관련 간담회 축소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47,400	31,363	13,876	33.8%	코로나19로 인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서면회의 개최에 따라 집행액 감소

-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불용의 사유는 대부분 COVID-19 장기화에 따른 대면회의 축소 또는 사업추진 취소 등으로 보고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에는 COVID-19가 새로운 상황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에 큰 불용규모를 나타냈던 사업들이 2021회계연도에도 다시 과도하게 불용 처리하고 있어, 예산의 불용 처리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사업 및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0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23,000	11,525	11,475	49.9%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77,100	132,056	45,044	25.4%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71,900	40,940	30,960	43.1%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93,860	61,797	32,063	34.2%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351,940	224,473	127,468	36.2%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53,609	31,244	22,365	41.7%

-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사업은 총 1천 9백만원 중 1천 2백만원을 집행하여, 35.6%(676만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음.

〈 2021회계연도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집행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유도	19,000	12,240	6,760	35.6%
사무관리비	6,000	0	6,000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6,240	759	10.9%
포상금	6,000	6,000	0	0.0%

- 본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본 ‘사무관리비’를 같은 이유(공직기강 관계관(서울시-LH-SH) 공동 워크숍 미개최)로 2년 연속 (2020회계연도 및 2021회계연도) 전액 불용 처리했음.

〈 2020회계연도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집행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23,000	11,525	11,475	49.9%
사무관리비	10,000	0	10,000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5,525	1,475	21.1%
포상금	6,000	6,000	0	0.0%

〈 2021회계연도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19,000	12,240	6,760	35.6%
사무관리비	6,000	0	6,000	100.0%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6,000	0	6,000	100.0%

〈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사업의 ‘사무관리비’ 불용 사유〉
(단위:천원)

회계연도	세부사업명	통계목	불용사유
2020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사무관리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반기 공직기강 관계관(서울시-LH-SH) 공동 워크숍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미개최
2021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사무관리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반기 공직기강 관계관(서울시-LH-SH) 공동 워크숍 미개최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는 감사위원회 운영, 외부전문가, 직무워크숍, 감사사례집 발간, 시구감사협의회 직무 워크숍, 적극행정(사전컨설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1천 1백만원의 예산 중 3천 2백만원을 사고이월하고, 2억 8천 6백만원 지출하여, 22.5%(9천 2백만원)를 불용처리하였음.

〈2021회계연도“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집행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불용률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411,107	286,498	32,252	92,357	22.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487	29,199	-	288	1.0%
사무관리비	298,100	179,143	32,252	86,704	29.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00	23,747	-	253	1.1%
특정업무경비	47,520	42,408	-	5,112	10.8%
포상금	12,000	12,000	-	-	0.0%

- 높은 비율(29.1%)로 불용처리한 ‘사무관리비’의 산출기초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5개 사업은 집행내역이 없는바, 당초 치밀한 사업계획 아래 예산이 편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짐.
-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예측(COVID-19 지속)할 수 없었는지, 예산편성 당시 COVID-19의 장기화를 예측할 수 없었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감액 조정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411,107	286,498	92,357	22.5%
사무관리비	298,100	179,143	86,704	29.1%
감사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	52,500	43,651	8,849	16.8%
공익감사단 감사 참여수당	159,600	121,021	38,579	24.2%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관련 워크숍	10,000	-	10,000	100.0%
일상감사 직무교육 운영	3,000	-	3,000	100.0%
감사담당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교육 운영	5,000	4,692	308	6.2%
감사 사례집 발간	10,000	6,760	3,240	32.4%
지구감사협의회 직무 워크숍	10,000	-	10,000	100.0%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	4,000	-	4,000	100.0%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4,000	2,800	1,200	30.0%
적극행정(사전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20,000	-	20,000	100.0%
적극행정(사전컨설팅) 교육 및 홍보	20,000	220	19,780	98.9%

- 감사위원회가 위 2개의 사업(“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였다면, 본 불용예산이 긴급하고 더욱 중요한 곳에 집행할 수 있었으며, 사업추진 중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없이 전액 불용 처리했음.

- 감사위원회는 사업의 규모, 집행시기, 재정수요, 집행여건, 사회적 상황 등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예산을 의결한 의회의 취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사업예산의 집행가능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조정(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등을 통한 효율적 예산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교류가 감사위원회의 중요 또는 핵심적인 업무였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워크숍 등과 같은 다른 대안을 마련해 추진했어야 하나, 감사위원회는 워크숍을 전면 취소 후 예산의 조정없이 관련 예산을 2년 연속 전액 불용 처리했는바,
 - 본 사업의 중요성,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2023년 예산편성 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예산의 변경사용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의 예산 변경사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현원 변경(증원)이 발생하여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158만 5천원을 변경사용 하였음.

〈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중 예산변경 내역 〉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		변경 후 예산현액
세부사업명	통계목		증	감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특정업무경비	16,560	1,585		18,145
	사무관리비	47,860		△1,585	46,275

- 공공감사담당관은 당초 현원을 17명(4급이상 1명, 5급 이하 16명)을 기준으로 특정업무경비(1,656만원)를 편성하였으나, 감사위원회 조직개편(2021.7.19.)에 따라 현원이 4명 증가하여, 특정업무경비 부족분을 ‘사무관리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예산을 변경사용(2021.11.)한 것임.
- 본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외부전문가 수당, 전문교육, 감사협의체 운영, 사례집, 워크숍 등을 위한 예산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 이유 없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차질을 빚을 밖에 없는데, 신중한 변경사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현원증가는 2021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것이며, 2021회계연도에는 두 차례(6월/제1회, 8월/제2회)의 추경이 있어,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부족한 특정업무경비를 예산원칙의 예외적 방법(예산의 변경사용)을 통해 확보했는데, 행정편의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본 사업의 ‘사무관리비’의 산출기초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과도한 불용처리 및 전액 불용처리가 대부분으로, 당초 불필요한 항목이 편성되었거나, 방만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행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양하고,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의 ‘사무관리비’ 산출기초별 집행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74,420	53,390	21,030	28.3%
사무관리비	46,275	26,846	19,429	42.0%
공공감사 외부 전문가 참여 및 자문 등 수당	7,200	-	7,200	100.0%
공공감사 관련 최신기법 및 전문교육을 위한 자문수당	1,220	-	1,220	100.0%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체 참석수당	2,440	-	2,440	100.0%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및 상임감사 평가(참석수당)	2,500	1,400	1,100	44.0%
공공감사 사례집 발간	10,000	8,946	1,054	10.5%
투자출연기관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8,000	-	8,000	100.0%
투출기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시스템 유지비)	16,500	1,650	14,850	90.0%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는 2건의 사업에 3천 2백만원을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음.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의 집행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불용률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411,107	286,497	32,252	92,357	22.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487	29,199	-	288	1.0%
사무관리비	298,100	179,143	32,252	86,704	29.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00	23,747	-	253	1.1%
특정업무경비	47,520	42,407	-	5,112	10.8%
포상금	12,000	12,000	-	-	0.0%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사고이월 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이월요구일	이월요구액	준공일	이월사유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무관리비	21.12.20	19,341	22.1.31	사전컨설팅·적극행정 사례집 및 홍보전단 제작
		21.12.20	12,910	22.2.28	적극행정 지원제도 홍보영상 제작

- 2021년 예산편성안의 산출기초에 본 용역은 모두 ‘적극행정(사전컨설팅)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내역을 쪼개어 사업을 추진한 후 3천 2백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임.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411,107	286,498	92,357	22.5%
사무관리비	298,100	179,143	86,704	29.1%
감사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	52,500	43,651	8,849	16.8%
공익감사단 감사 참여수당	159,600	121,021	38,579	24.2%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관련 워크숍	10,000	-	10,000	100.0%
일상감사 직무교육 운영	3,000	-	3,000	100.0%
감사담당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교육 운영	5,000	4,692	308	6.2%
감사 사례집 발간	10,000	6,760	3,240	32.4%
시구감사협의회 직무 워크숍	10,000	-	10,000	100.0%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	4,000	-	4,000	100.0%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4,000	2,800	1,200	30.0%
적극행정(사전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20,000	-	20,000	100.0%
적극행정(사전컨설팅) 교육 및 홍보	20,000	220	19,780	98.9%

- 본 사업은 2021년도에 추진할 적극행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 예산이나, 감사위원회는 본 용역은 2021년 12월 20일에 발주하였는바, 2021년의 홍보비는 사실상 2022년에도 사용하는 효과를 초래하였음.
- 행정관청은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을 당해연도에 징수하고 집행하여, 징수된 세금의 효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 감사위원회는 사업을 지연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및 효용성이 매우 저감된 것으로 보이는바, 감사위원회의 신속행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국가재정법」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또한 당초 산출기초를 초과한 지출은 허술한 예산편성, 또는 관례적 예산편성 등이 원인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으며,
 - 본 사업 내 홍보비의 과도한 지출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다른 항목들의 예산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우려되는바, 본 사업의 ‘사무관리비’ 내 다른 사업의 차질은 없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본 사업의 사무관리비 내 다른 사업들 역시 대부분 불용처리되고 있어, 당초부터 과도한 예산편성은 아니었는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 및 여건분석이 철저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 혹여나 사전조사 및 여건 분석 등을 시행하지 않고 구색맞추기식 예산편성 및 관행에 따른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임.

라. 성인지 예산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지방회계법」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3. (생략) 4. 성인지 결산서 5.~12. (생략)

- 감사위원회는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최종예산(4억 2천 8백만원) 대비 81.7%(3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의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

(단위:천원)

회계별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총계	3	428,550	350,217	78,333	81.7%
일반회계	3	428,550	350,217	78,333	81.7%

회계별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	-	-		
성별영향평가 사업	3	428,550	350,217	78,333	81.7%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	87,400	75,145	12,255	86.0%
안전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1	91,210	68,103	23,107	74.7%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1	249,940	206,968	42,972	82.8%
자치단체 특화사업	-	-	-	-	-
특별회계	-	-	-	-	-
기금	-	-	-	-	-

※ 감사담당관은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콘서트, 청렴도 설문조사, 청렴OX퀴즈 등 성인지예산으로 청렴정책을 성인지예산으로 추진했음.

※ 안전감사담당관은 안전감사음부즈만 위원의 남·녀 비율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추진함.

※ 조사담당관은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의 남·녀 비율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추진함.

○ 감사위원회는 위 3개 사업을 왜 성인지 예산으로 추진했는지 선정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성평등 영향평가 등을 누락하거나, 무의미한 분석을 결산서류로 제출하고 있는바, 성인지예산 편성 및 결산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감사담당관의 청렴사업(청렴콘서트, 청렴도 설문조사, 청렴OX퀴즈 등)은 청렴의식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성별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성인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인지예산 편성과 사업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감사담당관의 성인지예산 자체평가 〉

□ 자체평가

- 결과에 대한 원인 : 내부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내부, 외부 청렴활동을 다양하게 실시
 1. 내부활동: 청렴교육, 청렴콘서트,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청렴O/X퀴즈, 청렴 뉴스레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다양한 활동 실시
 2. 외부활동: 청렴알림문자 발송, 청렴해피콜 등
- 향후 개선사항 : 기존 청렴활동과 더불어 직원 및 시민이 더욱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청렴 활동 발굴 필요

※ 청렴사업은 성별 격차가 존재 하지 않는 사업임

출처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결산서

- 안전감사담당관은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 증가’를 목표로 하여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성인지예산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안전감사담당관은 안전감사옴부즈만 위원(20명)만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어, 너무 과소한 범위의 성인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안전감사담당관의 성인지예산의 대상자 〉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0	20	20
여성(비율)	1 (5.00 %)	2 (10.00 %)	2 (10.00 %)
남성(비율)	19 (95.00 %)	18 (90.00 %)	18 (90.00 %)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옴부즈만 위원 명단(20명)

출처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결산서

- 둘째, 위원은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직위로 안전감사담당관이 위원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시민이 쉽게 수궁할 수 있는 방식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위촉)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회의 위원
2.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3. 안전관리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전문가

○ 셋째, 성인지예산의 목표를 과도하게 낮게 설정했을 뿐 아니라 사업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결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 실질적인 성인지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이 요구됨.

〈 안전감사담당관의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달성현황 〉

□ 성과목표 달성현황

회계연도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2020	여성위원비율증가	10%	10%
2021	여성위원비율증가	10%	10%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옴부즈만 위원 명단(20명)

출처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결산서 78P 발췌

〈 안전감사담당관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자체평가 〉

□ 자체평가

○ 결과에 대한 원인 :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여성비율이 10%이고, 그중 상하수도분야 1명, 소방분야 1명으로 감사 분야에 따라 여성위원 활용도가 영향을 받아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비교적 낮을 수밖에 없었음.

○ 향후 개선사항 : 관련 협회, 기관으로부터 여성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사업수혜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출처 : 출처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결산서 78P 발췌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조사담당관은 공익제보 접수,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등을 성인지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성인지예산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조사담당관의 성인지예산의 대상선정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공익제보와 관련한 성인지예산은 위원의 성비보다 제보자의 성별에 따른 보호방식 및 지원방식을 다르게 지원하는 방식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보다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바, 감사위원회는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성인지 예산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한다. 시 감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부위원장으로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